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 정 : 2009. 11. 25.

최근개정 : 2015. 08. 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의 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수납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금의 책정) ① 입학금 및 등록금은 교육원가, 물가수준, 전 학년도 등록금 등을 고려하여 매 학년도 계열별로 책정한다.

② 등록금은 계열별로 신학·인문·사회계열, 이학·체육계열, 공학·예능계열로 구분한다. 사범대학은 각 과의 계열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적용한다. 단, 수학과 및 수학교육과 3,4학년은 신학·인문·사회계열의 등록금을 적용한다.

제3조(등록 시기) 학생은 매 학기 설정된 기간 내에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마침으로서 그 학기의 학생 자격을 얻는다. 단, 신입생은 입학 전 60일 이내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납할 수 있다.

제4조(등록금의 분할납부) ① 등록금을 분할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 중 총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금의 1/3이상을 납부하고, 미납액은 해당학기 개강일로부터 12주(수업일수 3/4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단, 신입생, 졸업유보생은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2011.8.24.개정][2012.2.1.개정][2015.04.08.개정]

② 학교가 정한 기한까지 분할납부 잔액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은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강신청 및 성적은 무효로 하고, 휴학 처리하며, 휴학이 불가능할 경우 제적처리한다.[2011.8.24.개정]

③ 분할납부 신청자가 개강일로부터 7주 이전에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납부 잔액을 반드시 완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잔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 할 경우에는 기 납부된 분할 등록금은 선납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반환되지 아니한다.[2011.8.24.신설][2012.2.1.개정][2015.01.21.개정]

제5조(부분수강과 등록금) 해당학과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7항의 기준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한다. 단,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하고 학점등급이 P인 과목만 이수 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면제한다.[2012.2.1.개정]

제6조(결석자등의 등록금) 이미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 등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제7조(등록금 반환) 이미 납부된 입학금 및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의 별표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입학금 또는 등록금을 반환한다. [2012.2.1.개정]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휴학 중인 자가 미복학으로 제적된 경우 [2011.08.24.개정]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8조(등록금 대체) ① 학기를 마치고 다음 학기 등록 마감일 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휴학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등록을 마치고 개강일부터 11주 이내에 군에 입대하는 휴학 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제대 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11주 이후 입대하는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기말고사 개별평가원을 제출하고 개별평가를 받아 그 학기를 마친 것으로 인정한다. 단, 개별평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된다.[2012.2.1.개정]

③ 등록금을 납부한 자로서 개강일부터 7주 이내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2012.2.1.개정][2015.08.12.개정]

④ 개강일부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의 별표 기준을 적용하여 반환한다. 단, 군 입대 및 질병, 육아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2012.2.1.개정] [2015.08.12.개정]

⑤ 등록 후 해당학기 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질병, 육아휴학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학기로 대체된다.

제9조(전과등록) ① 전과(부) 허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전과(부)가 허가된 학과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휴학자 중 등록이 유효한 학생이 전과(부)를 할 경우 등록금은 신청한 학기의 전출학과(부)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전출 전·후 학과(부)간에 등록금 차액으로 인해 환불 및 추가수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과(부)를 시행한 학기의 등록금을 적용한다.

③ 휴학자 중 등록이 유효한 학생이 전과(부)를 할 경우 당해 학기 이전에

장학금을 포함 하여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등록학기의 장학금 비율을 전과(부)를 시행한 학기의 전출 전·후 학과(부)간 등록금에 따른 장학금 비율로 적용하여 실 납입금의 차액에 대하여 수납 또는 환불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11월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 제정 이전에 적용한 고지 및 수납은 본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2-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3-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04월 0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5-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